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64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천준호 · 한민수 · 박상혁
박정현 · 주철현 · 한준호
한병도 · 문진석 · 염태영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 이후에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 건을 어떻게 수사 또는 조사하고 처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위법한

거래를 엄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 6조제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 및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사 및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 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 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 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u>이 경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u> <u>및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그 수사 및 처리 결과를</u> <u>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에</u> <u>통보하여야 한다.</u>